

EC의 牛乳割当制

(제 3 회)

Milk, the quota system, Green Europe
編 輯 部

本文은 日本에서 발행되는 世界의 畜産誌에掲載된 내용을 발췌하여 3회에 나누어 本誌에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註).

(3) 加盟國內買入者에게 出荷하는 基準数量의 決定

a) 결정방법의 선택

각 가맹국은 그 영토내의 각지역 매입업자에게 출하하는데 적용되는 보증한도수량 합계를 배분하게 되는데, 그 지역별 배분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각 매입업자나 우유 생산자마다 개별적으로 경정되는 기준수량(할당량)의 형태를 취한다.

방법A : 기준수량은 각 생산자 별로 결정되며, 생산자는 해당 12개월간의 기준수량 이상의 생우유 환산의 유제품 초과 출하량에 대해 우유 지표 가격의 75% 상당의 초과과징금(즉 84/85년도의 경우 100kg당 20.57 ECU)을 지불하게 된다.

방법B : 기준수량은 매입업자 별로 결정되며, 매입업자는 해당 12개월간에 기준 수량 이상 출하한 생우유 혹은 생우유 환산의 유제품 초과량에 대해 지표가격 100%상당의 초과과징금(84/85년도의 100kg당 27.43 ECU)을 부담해야한다. 이 과징금을 지불하지 않는 매입업자는 출하량을 늘린 생산업자에게 지불할 가격에서, 초과 출하량 기여율(寄与率)에 비례하여 과징금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

이 제도는 또 그리스(방법B를 채택)에 대해서만은, 모든 매입업자를 단일 매입업자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 융통성 있는 적용

A 또는 B 방법에 따라 기준수량을 결정할 때,

가맹국 당국은 생우유나 유제품(생우유환산)의 81년도 출하량 또는 구입량 플러스 그 1%에 의해도 좋고, 아니면, 각 가맹국에서 설정한 보증한도수량 합계가 기준수량합계를 웃돌지 않을 것을 보증하기 위한 환산율을 승(乘) 한후, 82 또는 83년의 출하량이나 구입량을 기초로해도 좋다. 특기(特記)한 공동체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이 조정율은, 각 가맹국의 생산·집하(集荷) 조건의 차이를 참작하기 위해 그루우프로 나누어진 생산자간, 혹은 지역간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81, 82, 83년의 출하량 혹은 구입량과의 관련으로 기준수량을 결정할 때 사용되는 비율도 어느 특정상황이나 케이스에 따라, 기준수량을 배분하기 위한 조정을 할 수도 있다.

c) 국가별 예비수량

가맹체국은 특별한, 또는 추가적인 기준수량을 인정할 수도 있는 생산자의 특별사정을 참작하기 위해 자국(自國)의 보증한도수량 합계의 범위내에서 예비수량을 만들수있다.

d) 특별케이스에 관한 규정

각 가맹국마다 보증한도수량 합계의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가별 예비수량 혹은 기타 수량에서 얻어지는 추가기준 수량은, 특정 생산자에 대한 전기의 특별사정을 고려하고 또 구조적 적용을 가능케하기 위해 배분할 수 있다. 특별 또는 추가적 기준수량은 아래와 같은 케이스에게 주어진다.

(I) EEC지령 72 / 159에 의해, 1984년 3월 1일 이전에 우유생산 발전계획을 채택한 생산

자는, 가맹국 결정에 따라 다음의 특별 기준수량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해당 발전계획이 84년 4월 1일 현재 아직도 실시중이라면, 그 계획에 정해진 생우유·유제품의 수량을 고려한 특별기준수량 그리고 해당계획이 끝났을때는 다음 해의 생우유, 유제품 출하를 고려한 특별 기준수량이 그것이다. 특별 조건인 경우에는 발전계획 이외에도 투자계획이 고려될 수 있다.

(II) 1980년 12월 31일 이후에 신규로 참여한 젊은 농업인에게는 특별 기준수량이 주어질 수도 있다.

(III) 기준수량 결정에 이용된 년차(年次) 생산이 예외적인 사태의 영향을 받았을때, 생산자가 요구하면 81~83 기간중의 다른 기준년(基準年)에 의해 그들의 기준수량을 계산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 해당 생산자의 농장에 큰 피해를 준 자연재해.
- 해당 생산자의 거치른 사료자원 또는 우사(牛舍)의 자연파괴.
- 젖소의 전부 혹은 일부에게 피해를 입힌 어떤 종류의 질병.
- 생산자 소유의 농지가, 많은 부분 강제 수용을 당하여 사료경작 면적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을때.
- 자영농장의 생산자가 장기간 작업불능 상태에 처했을때.
- 사육젖소의 전부 혹은 일부의 도난·사망에 따라 우유생산이 크게 저하했을때.

(IV) 어느 특정한 조건아래서, 또는 가맹국의 결정에 따라 EEC지령 72 / 159 (농업 경영근대화)에 의해 84년 4월 1일 이후에 승인된 우유 생산 발전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추가기준수량을 인정할 수도 있다.

(V) 가맹국 결정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산자라도 추가 기준수량의 취득 자격을 가질 수 있다.

e) 우유생산중지에 대한 국가원조

우유부문의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가맹국은 우유생산 중지를 분명하게 약속한 생산자에게

는 그 보상으로 일년에 한번 이상 년차지불 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비우게 되는 기준수량은 필요하다면, 국가의 예비수량으로 추가된다.

(4) 소비용 직판에 대한 기준수량

소비용 직판을 하는 우유생산자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수량을 기준수량으로 배분한다. 즉, 생우유 및 생우유 환산의 유제품은 81년 직판수량 플러스 그 1%, 81년 1월 1일 이후 84년 4월 1일 이전에 직판을 시작한 생산자, 혹은 81년 1월 1일부터 그 판매를 크게 변경시킨 생산자의 경우는, 84년 4월 1일 이전 12개월간의 직판수량이 그것이다. 84년 4월 1일 까지의 경영실적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연간 판매수량 및 적절한 기준수량을 판매실적에 따라 결정한다.

위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기준수량에 대해 정정이 필요할 때는, 직판 기준수량의 합계가 해당 가맹국에 명시된 수량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보증하는 조정비율로써 시정된다.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직판 생산자에게 추가 또는 특별수량을 부여하는 몇 가지 규정이 있다. 그것은 매입업자에게 내는 출하량에 관해 특별히 정해진 규정과도 유사한 것이다.

직판기준수량의 배분을 이미 받았으나, 직판을 전면적 혹은 일부 중지하고, 매입 업자에게 적용되는 보증한도수량 합계 중에서 기준수량을 줄 수 있다면, 그들 생산자는 매입업자에게 생우유·유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 여기에 필적하는 규정으로는, 매입업자에게 하는 출하를 전면 혹은 일부 직판으로 바꾸고 싶다고 희망하는 생산자의 경우에도 있다.

각 생산자 기준수량 이상으로 생우유 및 생우유 환산의 유제품을 직판했을 경우, 그 초과분에 적용되는 초과과징금의 율(率)은 지표 가격의 75% (84 / 85년도는 kg당 20.57 ECU)이다.

(5) 기준수량의 양도성

매입업자·생산자·직판에게 인정된 기준수량은 양도나 매각을 할 수 없다. 단 농장과 경영의

매각·임대·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며, 이 경우는 기준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임대인·상속인에게 인계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국은, 해당 수량의 일부를 해당 국가의 예비수량에 추가한다고, 규정지을 수 있다. 농장 전체를 매각·임대·상속할 경우 그 농장의 기준수량의 전부가 인계자에게 이전되나, 매각·임대·상속의 대상이 농장의 일부가 될 경우, 해당 농장의 기준면적 합계는, 우유생산에 사용되는 면적에 비례하거나, 가맹국에 의해 정해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해당 농장을 경영하는 몇 사람의 생산자에게 배분된다.

방법B의 매입업자가 1인 이상의 매입업자를 대신해서 그 업무를 전체 혹은 일부를 인계할 때 생산자는 출하하는 매입업자를 바꾸는 경우를 포함해서, 해당 매입업자의 년간 기준수량을, 그가 경영을 인계하는 단수(單數) 혹은 복수의 매입업자의 기준수량 전체 혹은 일부를 조정하는 몇 가지 규정이 있다. 한편 가맹국은 거기에 관계 있는 수량을 자국(自國)의 예비수량에 추가하는 규정을 설정할 수 있다.

방법B가 적용되었을 때 복수 매입업자의 기준수량을 특별 케이스의 생산자와 구(古) 직판 생산자(복수매입자에게 내는 출하기준수량을 인정받은)에게 할당하는 추가수량을 고려하기 위해 혹은 농장의 매각·임대·상속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라도 조정(調整) 된다.

(6) 초과과징금의 적용과지불

방법A·B에 따라 매입자에게 출하할 때 기준수량 이상의 생우유·유제품 출하량에 대한 과징금은 12개월 중 4 반기마다 내입금을 징수한다. 그 금액은 지불의무가 있는 생산자(방법A)나 매입업자(방법B)에 대해 해당 4 반기 말의 누적기준 수량을 상회한 생우유나 생우유 환산 유제품의 초과수량을 근거로 산출된다. 지불은 해당 4 반기 말부터 45일 이내여야 하며, 과징금 징수에 관한 특별한 과도적 제도는 그리스·이탈리아 지역내의 특정 산간 지역에 적용된다. 기타의 가맹국과 역내 제지역은, 84/85년도 처

음 두 개의 4 반기 중의 우유초과 출하량에 대한 과징금은 합쳐서 과징금 제 1회 지불을 84년 11 월 중순까지 지불하도록 요구될 것이다.

앞에 밀한 4 반기 혹은 수(數) 4 반기의 지불한 과징금이 해당 12개월 초 이후에 지불될 금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금 지불액을 환불하는 규정이 있다.

12개월 기간 말에 지불의무를 가진 생산자나 매입업자는 최종적인 과징금 지불액이 산출된다. 그것은 12개월간의 실제 출하량이 년간 기준수량을 상회한 부분에 의거한다.

소비자에게 직판하였으며, 기준수량을 초과한 생산업자의 과징금 지불은 매년 1회 징수된다. 해당 12개월 기간 말에서 3 개월이내에 지불해야 하며 4 개월을 넘을 수 없다.

(7) 기타 규정

할당·과징금제도에 관한 규칙은 전유 뿐 아니라 다른 유제품(크림·버터·치즈)의 출하량·직판에 적용하는 과징금 규정도 포함되며 여기에 적용되는 과징금은 전유(全乳)환산을 기초로 한다. 부정의 방지를 위해 출하 또는 구입한 우유의 평균 지방 함유율 규정도 설정되어 있다.

이미 실시되어온 현행 공동책임과징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맹국은 과징금 징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채택하고 관계자들에게 그들이 과징금제도의 제규정을 지키지 못했을 때 취해지는 법적과 행정적 제재를 통고해야 한다.

4. 買入業者에게 出荷하는 割当制度 84 / 85 年度 加盟國의 實施

(1) 일 반

처음 12개월 동안에 가맹국이 적용하는 할당 제도의 중요한 방법은 〈付表 2〉에 명시되어 있다. 강조할 점은 〈付表 2〉에 포함된 자료와 아래의 본문이 서술하는 요약이 잠정적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제도실시의 상세한 규정의 일부는 그뒤 개정되었으며 해당기간 중 혹은 기간

말에 최종적으로 조정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2) 방법A . 방법B

영국을 제외한 모든 가맹국은 각기 국내의 모든 지역에 방법A 혹은 방법B를 적용하기로 했다.

벨기에 · 서독 · 네덜란드 · 영국의 북아일랜드 만이 최초의 12개월 기간중에 방법A (생산자에게 과징금 지불의무를 부과)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다른 가맹국(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을 포함)들은 방법B (매입업자가 과징금 지불의무를 갖는다.)를 적용했다.

(3) 기준년 (基準年) 선택

가맹국의 대다수는 생산자나 매입업자에 관한 기준수량 결정에 대해, 조정비율을 조정 후의 1983년도 출하량을 기준으로 할것을 채택했다. 그러나 그리스 및 룩셈브르크는 81년 출하량에 의해 기준수량을 결정하기로 되어있다.

(4) 생산자의 규모와 지역에 따른 기준수량 결정의 차이

a) 생산자의 규모계층별

벨기에 · 서독 · 아일랜드는 생산자와 매입업자 개개인의 기준수량을 계산할때 해당 생산자의 우유출하량에 따라 1983년 출하량에 적용되는 조정비율에 차등을 두었다.

벨기에는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낙농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6만ℓ 미만을 출하하는 우유생산자의 기준수량은 다른 생산자에 비해 낮은 삽감비율로 계산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매입업자의 기준수량은 83년도 출하량에다 연간 출하량 1만 5천 갤론(약 68,000ℓ) 이상의 생산자와 그 미만의 생산자의 차이 (수량 또는 비율)를 보탠 합계를 기초로 한다. 따라서 83년과 비교해 출하생산자의 대다수가 소규모일때 매입업자의 기준수량은, 확실히 보다 대규모 출하 생산자가 매입업자의 기준수량보다 클것이다.

서독 생산자의 기준수량은 우유 출하량에 의해 한편 특정규모 생산자는 81~83년도 출하량

증가도에 의해 상이 ((相異) 한 삽감율로 계산된다. 따라서 83년도 베이스의 최고 삽감율은 81~83년의 가장 많이 출하하고 최고의 출하 증가율을 보인 생산자의 기준수량에 적용된다.

영국 또한 국가의 생산 중지 보상조치의 급부를 받은 생산자가 포기한 기준수량 재분배에 있어서는 소규모생산자(잉글랜드 및 웨일즈는 83년에 20만ℓ 미만 생산자)를 우선할 방침이다. 그 목적은 그들 생산자의 기준수량을 추가하여 83년도 출하수준까지 올리고자 하는 일이다.

b) 지역별

프랑스와 영국은 83년도 출하량에 의거해서 기준수량을 결정할때, 어느정도 지역적 차별을 적용할 의향이라고 했다.

프랑스는 산간지역 매입업자의 최초의 기준량을, 83년 출하량에 대한 다른지역의 경우 보다 낮은 삽감율로 계산한다.

영국은 몇개의 외딴섬 및 스코틀랜드 반도지방의 기준수량을 프랑스의 산간지역과 같이 영국의 타지방보다 낮은 (83년 출하베이스) 삽감율에 의해 설정한다.

(5) 국가별 예비수량의 설정

벨기에 · 덴마아크 · 그리스 · 네덜란드 · 영국은 생산자나 매입업자의 기준수량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년도 출하량에 적용하는 비율로써 최초의 국가별 예비수량이 설정된다. 이 예비수량은 특수케이스 생산자에 대하여 특별 또는 추가의 기준 수량을 주기 위해 쓰여진다. 다른 가맹국에서는 특수케이스를 위한 수량을 기준년도 초부터 우유생산을 중지하고 있는 생산자로부터 혹은 장래에 낙농부문을 이탈할 생산자 (우유생산 중지에 대한 국가별 보상조치에 따라 급부를 받는 생산자를 포함)에게서 얻어지는 기준수량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6) 우유생산 중지에 대한 국가별 보상조치

서독 · 프랑스 · 이탈리아 · 영국 등은 우유 생산 중지를 분명하게 약속한 생산자에 대해 국가별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향으로 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는 해당국에 반환되는 기준수량에서 특수케이스로 인정된 나머지 생산자나 신규 생산자에 대한 특별 혹은 추가적 기준수량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서독은 1,000kg당 1,000마르크, 농장당 최고 15만 독일 마르크가 해당 생산자에게 10년 만에 나누어 지불될 것이다. 이 계획은 84년 6월부터 10월까지 신청을 접수하게 되며 합계 100만 톤(서독 보증 총량의 4% 강에 해당)에 달하는 기준수량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프랑스는 84년 6월에 계획을 개시했으며, 합계 100만 t(프랑스 보증총량의 약 4%)의 기준수량을 포기시키려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84년의 합계 6억 500만 프랑의 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계획은 다음 세 가지 타입의 원조가 규정되어 있다.

① 65세 이상의 생산자나 노령년금 수급 중의 생산자에 대한 보상지불액은 우유 3ℓ를 한도로 해서 우유지표가격의 3분의 1(즉 ℓ 당 0.61 프랑), 상당 혹은 생산자 1인당 1만 8,300프랑이다.

② 55~65세의 노령년금 미지급 생산자에 대한 년간 보상지불액은 생산자당, 최초의 4만 5

천ℓ에 대하여는 지표가격의 3분의 1(84/85年度 ℓ 当 0.61프랑) 상당, 다음 1만 5천ℓ는 지표가격의 6분의 1(84/85年度는 ℓ 当 0.305프랑) 상당이나, 생산자당 3만 2,025프랑을 한도로 한다. 이 보상금 지불은, 수급자가 65세 혹은 노령년금을 지금 받을 때까지 계속된다.

③ 55세 미만의 생산자에게 대한 보상금 지불은 일시불이며 최초의 6만 ℓ는 지표가격의 3분의 1상당, 다음 3만 ℓ는 동가격의 6분의 1상당으로 하며, 생산자당 4만 5,750프랑을 한도로 한다.

영국에서는 생산중지 보상계획을 기준수량 포기 생산자에 대한 지불로써 5,000ℓ 당 650파운드로 정하고 있다. 이 액수는 ℓ 당 13펜스에 해당하며, 5년간 균등 지불한다. 생산자당 지불 한도액은 일정치 않으며, 5년간에 걸친 이 계획의 자금으로는 5,000만 파운드까지 지출 가능하다. 계획의 목적은 잉글랜드 및 웨일즈, 스코트랜드는 기준수량 합계의 2.25% 까지, 북아일랜드는 3% 까지 매수하는데 있다. 이것을 위의 비율로 환산하면 영국전체로써 약 38만 5,000t에 해당한다.

해외소식

台灣, 1986 畜產物 生產計劃

대만정부가 발표한 1986년도 畜產物 生產計劃을 1985년 推定實績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5	1986	증감율
	(추정실적)	(계획)	(%)
돼지(도축, 1,000두)	10,400	9,000	△13.5
소(1,000두)	25	27	8.0
닭(1,000수)	156,000	154,000	△ 1.3
오리(1,000수)	31,200	38,000	21.8
거위(1,000수)	3,100	3,500	12.9
칠면조(1,000수)	1,140	1,350	18.4
우유(톤)	82,000	93,350	13.8
계란(백만개)	3,830	3,550	△ 7.3

乳業統計

I. 牛乳生產及消費實績

區分 年月	原乳生產量(M/T)		牛乳消費量(M/T)		年間人口 1人當消費量(kg)	
	納乳量	前年對比(%)	消費量	前年對比(%)	消費量	前年對比(%)
'79.	380,730	118.7	374,410	114.9	10.0	113.6
'80.	452,327	118.8	411,809	110.0	11.0	110.0
'81.	512,875	113.4	557,722	135.4	14.4	130.9
'82.	576,236	113.0	592,720	106.4	15.1	104.9
'83.	712,206	123.6	728,575	122.9	18.2	120.5
'84.	840,544	118.0	833,504	114.4	20.5	112.6
'85.	1,006,103	119.7	980,539	117.6		
'85. 1	77,914	119.5	57,929	95.8	-	-
2	75,273	117.5	61,470	106.5	-	-
3	82,710	119.4	73,313	102.0	-	-
4	83,542	119.3	83,492	111.5	-	-
5	87,730	119.5	88,873	113.3	-	-
6	85,707	120.9	85,357	117.3	-	-
7	86,644	120.2	84,763	128.2	-	-
8	87,639	123.1	84,999	121.1	-	-
9	84,853	120.4	105,457	144.6	-	-
10	84,268	119.4	85,566	119.7	-	-
11	83,323	120.2	88,461	129.2	-	-
12	86,500	116.6	80,859	129.4	-	-

II. 品目別 消費實績

1. 飲用乳

品名 年月	市乳(M/T)			前年同期(月)對比(%)				
	白色	加工	計	酸酵乳(M/T)	白色	加工	計	酸酵乳(%)
'79.	170,942	72,347	243,289	114,508	117.1	97.3	110.4	143.1
'80.	188,365	90,691	279,056	98,084	110.2	125.4	114.7	85.7
'81.	279,945	92,500	372,453	82,672	148.6	102.0	133.5	84.3
'82.	350,263	78,388	428,651	97,900	125.1	84.7	115.1	118.5
'83.	448,216	78,768	526,984	109,977	128.0	100.5	122.9	112.3
'84.	525,910	86,296	612,206	124,559	117.3	109.6	116.2	113.3
'85.	643,492	92,742	736,234	146,770	122.4	107.5	120.3	117.8
'85. 1	36,965	6,395	43,360	9,370	123.1	122.8	123.1	118.6
2	35,402	6,426	41,828	9,716	113.4	118.6	114.1	122.1
3	48,174	8,086	56,260	11,256	115.6	112.7	115.1	117.3
4	55,169	9,462	64,631	11,270	123.7	115.8	122.1	106.9
5	57,979	9,402	67,381	12,812	113.2	107.2	112.3	102.4
6	55,598	8,017	63,615	11,599	113.6	113.7	113.6	107.7
7	56,249	7,887	64,136	13,184	123.4	116.0	122.5	115.9
8	54,896	7,598	62,494	12,706	122.8	104.1	120.2	110.9
9	65,861	8,144	74,005	13,018	132.8	104.9	129.0	116.5
10	65,273	8,153	73,426	15,797	129.1	109.8	126.6	136.3
11	59,445	6,915	66,360	13,321	127.8	79.4	120.2	143.9
12	52,481	6,257	58,738	12,721	127.1	96.1	122.9	122.1

2. 粉乳

品名 年月	粉 乳 (M/T)				前年同期(月)對比(%)			
	全 脂	脱 脂	調 製	計	全 脂	脱 脂	調 製	計
'79.	4,767	3,628	14,571	22,966	108.9	177.5	107.2	114.8
'80.	6,532	3,018	16,146	25,696	137.0	83.2	110.8	111.9
'81.	10,925	3,066	16,428	30,419	167.3	101.6	101.7	118.4
'82.	8,134	2,953	17,457	28,544	74.5	95.8	106.3	93.8
'83.	8,917	3,864	18,881	31,662	108.6	130.8	108.2	110.7
'84.	8,144	5,527	18,526	32,197	91.3	143.0	98.1	101.7
'85.	12,745	6,124	18,751	37,620	156.5	110.8	101.2	116.8
'86. 1	712	355	1,644	2,711	92.3	63.8	92.9	87.6
2	803	396	1,584	2,783	120.6	84.6	104.6	105.1
3	914	504	1,506	2,924	89.3	75.8	87.4	85.7
4	677	576	1,698	2,951	79.6	132.7	106.6	102.5
5	748	682	1,604	3,034	97.8	153.3	100.2	107.9
6	758	588	1,504	2,850	111.6	124.1	98.3	106.2
7	735	612	1,538	2,885	124.6	152.6	110.3	120.9
8	727	613	1,547	2,887	197.6	116.8	101.8	119.6
9	2,567	511	1,581	4,659	491.8	115.1	103.1	186.8
10	1,379	438	1,515	3,332	244.5	126.2	105.4	141.9
11	1,252	417	1,640	3,309	214.0	103.5	115.7	137.5
12	1,473	432	1,390	3,295	194.1	118.4	93.3	126.1

3. 其他 乳製品

品名 年月	其 他 乳 製 品 (M/T)				前年同期(月)對比(%)			
	煉 乳	비 터	치 즈	아이스크림	煉 乳	비 터	치 즈	아이스크림
'79.	1,241	627	68	54,918	115.4	81.1	75.6	131.4
'80.	1,183	740	123	52,675	95.3	118.0	180.9	95.9
'81.	2,422	1,241	128	37,132	204.7	167.7	104.1	70.5
'82.	1,599	1,317	145	28,011	66.0	119.1	113.3	75.4
'83.	1,263	1,635	182	25,472	79.0	124.1	122.5	90.9
'84.	1,894	1,990	296		149.9	121.7	162.6	
'85.	2,390	2,841	480		126.2	142.8	162.2	
'85. 1	102	198	28.1		107.3	101.5	113.3	
2	81	200	29.2	-	50.9	144.9	110.2	
3	119	211	32.0	-	66.1	122.0	107.7	
4	121	222	82.2	-	45.1	144.2	289.4	
5	202	209	34.1	-	71.6	163.3	128.7	
6	188	187	32.0	-	74.3	147.2	170.2	
7	364	219	36.1	-	360.4	155.3	196.2	
8	442	202	36.0	-	545.7	126.3	164.4	
9	253	252	39.4	-	202.4	161.5	174.3	
10	175	381	41.6	-	157.6	225.4	176.2	
11	185	220	40.4	-	181.4	127.9	146.9	
12	158	340	48.9	-	115.3	122.7	178.5	